

## 개인정보보호법 연구

- CEO, 최고경영자의 관점에서 벌칙조항을  
중심으로-

A legal study for Personal Informaion  
Protection law

- a point of view from CEO and Top  
manager focus on punishment -

전 동 진\* · 정 진 흥\*

### Abstract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조항 및 양벌규정을 기관 및 기업체의 CEO 및 최고경영자의 관점에서 제 70조에서 제75조의 벌칙조항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구성은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하여 먼저,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경영진의 주요 관심사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Keywords:** 개인정보보호법, CEO, 벌칙조항, 양벌 규정

---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 1. 서 론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공포되고 이후 6개월이 경과되는 2011년 9월 30일 전면 시행되었다. 따라서 바쁜 CEO 및 경영인들의 관점에서 필히 인지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 규정과 양벌 규정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개인정보의 침해와 관련한 관리적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예방 활동을 하여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이 논문을 통하여 제고됨을 기대한다.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의 벌칙조항의 예를 들면 제71조 1항의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를 보면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CEO 및 경영자는 용어도 어렵거니와 제17조 조항을 다시 찾아가서 봐야 하는 불편함으로 가장 지원과 역할을 많이 할 최고경영진들이 파악하기 쉽게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적인 사항과 경영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벌칙조항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 2. 문 헌 고 찰

### 2.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법률적 정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제1항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이사의 성명, 이사, 감사 등 임원정보, 자산,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상 보호받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신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되기 어렵다. 다만 사자에 관한 정보가 생존하는 유족 등 후손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 등 후손의 개인정보로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2.2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항목은 개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서부터 개인의 성향, 사상, 신조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은 뿐만 아니라, 유형이 다양하다. <표 1>은 행정안전부에서 유형별로 분류한 표이다.

<표 1> 개인정보 유형별 분류(2009 행정안전부 기준)

유형	개인정보의 예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이메일주소,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
신체적정보	(신체정보)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정보, 키, 몸무게 등 (의료, 건강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 등
정신적정보	(성향정보) 도서, 비디오 등 대여기록, 잡지 구독정보, 물품 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내면의 기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 노조 가입 및 활동내역
사회적정보	(교육정보) 학력, 성적, 출석상화, 자격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등 (법적정보) 전과, 범죄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근로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등 (병역정보) 병역여부, 군번, 계급, 근무부대 등
재산적정보	(개인금융정보) 소득,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동산, 부동산 보유내역, 저축내역 등 (신용정보) 개인신용평가정보, 대출 또는 담보설정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기타	전화통화내역, IP주소, 웹사이트 접속내역, 이메일 또는 전화메시지, 기타 GPS 등에 의한 개인위치 정보

## 2.3 개인정보의 특성

개인정보는 제공 및 활용주체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특성에 따라 고유한 침해원인이 발생하게 된다. 개인정보의 소유자인 개인, 해당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주체인 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구분되는 개인정보의 특성이 있다.

첫째로 개인정보의 소유자인 개인 또는 이용자에게 고유한 개인정보의 특성을 보면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재산적 가치를 가진 일종의 자산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자산이 되어버린 개인정보는 회사의 양도, 양수시 객관적으로 평가된 가격으로 다른 자산과 함께 거래된다. 예로 거대 인터넷서점 Amazon.com은 일찍이 2000년 9월 Privacy notice를 변경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는 영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본사는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않는다. 고 선언한 규정 바로 아래에 “고객정보는 일반적으로 영업자산(Business asset)의 일부”이며, 영업의 일부나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사 함께 거래될 수 있다는 내용을 끼워 넣었다(전현욱, 2010).

둘째로, 기업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와의 관계를 구축함에 있어 지속적이며 발전적 방향의 고객관계를 설정하고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CRM, 고객맞춤 서비스 제공 및 Target marketing 등의 활동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이 고객의 개인정보인 것이다.

## 2.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행전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정안이 2011년 3월 29일 공포되고,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되는 2011년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하에서 개법법들이 운영되는 계층적 체계로 규율되고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대상이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었으며 보호범위도 고객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기업기관의 근로자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또한 동법에서는 집단 분쟁 조정 및 단체소송제도도입, 개인정보 유출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유출통지제도 도입,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도입 등 신규제도의 도입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었고 공공기관의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무화도입, 개인영상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에서만 규제되던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이 민간부분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노력들이 한층 강화되었다.

## 2.5 개인정보보호법률

### 2.5.1 주요 내용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약 350만 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확대(약 300만개 기관 사업자 제도권 편입)하여 법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의의

를 둔다.

이번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민간부분 오프라인 온라인 부분의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바 기존에 시행되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일반법으로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권 보장,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 신고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권리침해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 도입으로 국민의 피해구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공공기관은 특히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표 2>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정리표

	제목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법률의 목적, 용어의 정의(적용범위) 개인정보보호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수집이용기준, 제공기준 및 수집제한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의 파기, 동의 받는 방법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한,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제한, 영업양도 등 개인정보 이전 제한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의 열람요구권, 정정삭제 요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권리행사방법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제6장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	설치구성 위원 신분보장, 조정신청, 처리기간, 자료요청, 조정 전 합의 분쟁조정
제7장	개인정보 단체 소송	소송대상, 전속관할, 대리인선임,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 효력 등
제8장	보칙	적용의 일부제외, 금지행위, 비밀유지의무 의견제시, 개선권고, 침해사실 신고,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시정 조치, 고발 및 징계권고, 결과 공표, 권한 위임, 위탁 등
제9장	벌칙	벌칙, 과태료 및 양벌 규정
부칙		시행일, 다른 법률일 폐지,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

## 2.5.2 벌칙 조항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침해가 예전부터 많이 발생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의 인식부족과 법률제도의 미비로 실제로 형사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2008년 개인정보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람은 전체 237명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불과 약 30%인 71명만 기소되었다. 그나마 공판절차로 넘어간 사람은 단지 16명으로 피의자의 6.8%에 불과하며 55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며, 절반인 118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규정(제23조)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도 365명에 불과하며 그 중 단지 21.7%인 79명만 기소되었다(전현욱, 2010).

정보보호 관점에서 보면 표 4에 나타난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조항이 기술적 물리적인 보호 조치보다 관리적인 조치사항이 많다. 예로 제71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조항을 보면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유출 시킨 경우 이 경우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기만 하여도 5년 이하 5천만 원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적인 조치인 직원교육이라던지 내부직원의 관리적인 처리방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보통 보안사고가 외부인보다는 내부인의 악의적인 행동이나 보안 의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당장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증설이나 인력 충원보다는 관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상시 교육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제 74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그 속한 법인이나 개인이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과 기업신뢰도하락 등 심각한 이미지 손상이 초래 된다.

### 2.5.2.1 제 70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제 70조는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한 부분의 벌칙이고 모든 벌칙 조항 중 가장 강력하다.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국민들의 인식이 공공기관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에서 유출되면 국가기반이 흔들리는 엄청난 과장이 몰고 올 것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개인정보의 경우는 이 조항에 해당사항이 없다.

### 2.5.2.2 제 7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등 유출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이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이 벌칙조항에 해당사항이 없다. 제3자란 정보주체가 동의한 사업자 외의 제3자를 의미한다. 당초 동의한 서비스와 무관한 업무에 관련한 사항 이를테면 텔레마케팅 상품홍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의 필요성이 낮은

서비스에 제공될 경우 이 벌칙조항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동의사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기업체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업무목적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업체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은 벌칙 조항에 해당사항은 인터넷쇼핑몰의 택배서비스가 그러하다.

### 2.5.2.3 제 72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제72조의 전체조항은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 서비스 이용과 무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해킹 등 불법적인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수집, 속임수 내지 정보주체 기만에 의한 개인정보수집의 경우이다. 영상정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부정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훼손시킨 경우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72조2항을 보면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해석하면 개인정보의 관리적 측면을 더 중시하여 해커들의 부정한 탈취행위보다 개인정보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에 책임을 더 엄중히 함을 알 수 있다.

### 2.5.2.4 제 73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

73조의 항목은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 관리적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회원탈퇴, 정정, 삭제, 정보이용금지 등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 및 관리적 책임에 대한 경우로서 계속 이용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이다. 일부 사업자들이 회원확보를 위하여 회원가입은 쉽게 하면서 탈퇴절차를 어렵게 만들거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무단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철회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 2.5.2.5 제 74조(양벌 규정)

양벌 규정으로 제70조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유출사건시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 원의 벌금형을 구한다. 따라서 법인이나 개인은 개인정보를 관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중벌을 면할 수 있다.

제71조에서 제73조까지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문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양벌 규정은 개인정보관리자, 개인정보처리자 등 관계자 외에 해당법인의 대표자,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도 공동책임을 묻는 사항임으로 공공기관의 기관장, 법인의 대표, 개인사업자 등 경영진에도 책임을 물어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경영진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기관이나 법인의 대표자는 형벌사항은 없고 과태

료에 대한 벌칙이 주어지므로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에 대한 면책사항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개인정보유출 사고시 언론의 보도로 인한 기업체의 신뢰도하락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들의 집단소송 등 물적 심리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2.5.2.6 제 75조(과태료)**

제 75조의 내용을 간략히 파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소집하는 처벌조항이다.

둘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의 관리적인 측면으로 정보정책의 변경, 수집시 서비스의 제공, 파기 개인정보의 안정성확보, 개인정보의 사이클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셋째,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경우 1항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분리하여 저장하는 것,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 안내판 표지, 영업양수도시 이전 및 고지사항 관련한 내용이다.

<표 3> 제9 장 개인정보보호법 벌칙조항 정리표

법률	내용	벌칙
제70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의 중단 또는 마비의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 2.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 6.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	<p>1.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p> <p>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p> <p>3.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자</p>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73조	<p>1.고유식별정보의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p> <p>2.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등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p> <p>3.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p>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74조	<p>1.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제71조에서부터 제73조까지의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양벌 규정
제75조	<p>1.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p> <p>2.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p> <p>3.사생활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한자</p>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개인정보정책 변경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3천만 원 이하의

	<p>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p> <p>2.개인정보수집 거부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p> <p>3.개인정보처리시 정보주체에게 수집출처 고지 아니한 자</p> <p>4.불 필요시 개인정보를 과기하지 아니한 자</p> <p>5.정보주체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p> <p>6.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자</p> <p>7.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곳에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한 자</p> <p>8.정보주체에게 유출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p> <p>9.개인정보 유출시 전문기관에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10.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p> <p>11.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정, 삭제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12.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과기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과태료</p>
	<p>1.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지 아니한 자</p> <p>2.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자</p> <p>3.영상정보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자</p> <p>4.업무위탁시 업무 목적외 정보처리한 자</p> <p>5.정보주체에게 위탁사항정보를 알리지 아니한자</p> <p>6.영업양수도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p> <p>7.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p> <p>8.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p> <p>9.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p> <p>10.사건후 물품, 서류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11.사건후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p>	<p>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의 벌금</p>

### 3.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 9장 벌칙조항 및 양벌규정을 중심으로 CEO 및 최고경영자의 관점에서 제 70조에서 제75조의 필수 인지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파악했다. 바쁜 회사 중역들은 복잡한 법률 용어나 변호이동의 번거로움을 없애서 간략히 도표로 정리하였다.

둘째, 이 논문은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정의와 주요 내용의 기본 사항을 파악하여 기관이나 기업체의 중요 의사결정자인 경영자들이 보다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셋째,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하에 각 사에 맞게 대책을 수립하여 체크리스트로 정보수집 및 활용이 가능하고 위반 시 관련처벌 법규를 숙지를 통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경영자가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다.

본 연구의 향후 연구 방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다 시스템화하여 사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및 개인정보 관리자 및 처리자가 벌칙조항을 파악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주요 기술적, 관리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 4. 참고 문헌

- [1] 강달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한국인터넷 법학회, 2004.12.
- [2] 서동일, “개인정보 보호기술의 개발과 산업육성”, ETRI, 2005
- [3] 이성몽,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방법”, 국민은행 전산정보그룹,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주간기술동향,2005.05.
- [4] 조동기, 김성우, “인터넷의 일상화와 개인정보보호, KSDI 이슈리포트”, 2003.08.
- [5] 윤용근, 정병주,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하의 개인정보 침해 유형분석”, 한국전산원 정보화정책 이슈, 2004.
- [6] 전현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형법정책”, 2010
- [7] 개인정보보호 기술 및 표준화 동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12.
- [8] 개인정보 보호백서, 2009, 2010.
- [9] 이기혁,이강신,박진식, “개인정보보호의이해와 활용”, 2011
- [10] 홍승필, “개인정보보호개론(사례연구 및 기술 중심으로)”, 2010,한티미디어
- [11] KISA 개인정보인증심사 제도자료 등
- [12] M.Ohkubo, K. Susuki and S. Kinoshita, "Cryptographic Approach to "Privacy-Friendly" Tags", RFID Privacy workshop (MIT, Cambridge, MA, Nov. 15 2003.